

장묘제도 개선방안

—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시안을 중심으로—

장묘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

1996년 10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한 장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.

- 묘지의 적정 설치 및 합리적 관리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.
- 화장률 제고를 위한 화장 관련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함.
-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전사회적 장묘관행의 개선을 유도함.
- 현행 법령 중 준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.
-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개선을 추진함.

장묘관계 법령 정비 및 개선 추진 현황

- 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61년)후 '73년, '81년 2차 개정
- 묘지 등에 관한 지도·권장기준 마련 시행('91년)
 - 법률적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장묘 관행 개선 유도
 - 주요 내용: 묘지단위면적을 집단묘지 6평, 개인묘지 9평 이하로 축소, 묘지 사용기간 계약제, 납골제도 보급 확대
- 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('93년)
 - 묘지 단위면적 축소, 묘지 사용기간 제한, 각종 규제 완화 등 지도·권장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, '96년 이후 재검토·추진하기로 하고 보류
- 장묘제도를 제도개혁과제로 선정하여 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한 『장묘법』 제안('96년 10월)

.....

주요 정책토론(1) : 장묘제도 개선방안

- 1기당 묘지면적을 집단묘지는 3평 이하, 개인묘지 및 가족납골묘지는 6평 이하로 축소한다.
- 장묘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장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제도 개혁에 착수함.
 - 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의 제도개혁과제의 하나로 장묘 제도가 선정되어 장묘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('96년 6월), 「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('96년 10월).

장묘관계 법령 개정시안의 주요 사항

묘지 단위면적의 축소

- 현행 법령 규정상 집단묘지는 9평 이하,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(미국 0.5~1평; 캐나다 1~1.5평; 일본 1.2~2평).
- 개정안: 1기당 묘지면적을 집단묘지는 3평 이하, 개인묘지 및 가족납골묘지는 6평 이하로 축소함(안 제17조).

묘지 사용기간의 합리화

- 현재 법령상 제한 규정은 없고, 훈령으로 집단묘지의 기본사용 기간을 15년으로 하고, 1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토록 권장하고 있을 뿐임.
- 개정안: 집단묘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하도록 함(안 제18조).

화장·납골제의 확대 보급

- 현재 재정지원 수준의 미흡으로 화장 및 납골시설이 열악하여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으며,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설치 확대가 곤란한 실정임.
- 개정안:
 -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묘지를 의무화하며, 공설묘지·화장장·납골시설 설치시 국공유지 무상사용 및 시설비 보조근거를 마

련함(안 제15조, 제33조).

- 사설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를 현행 허가제에서, 비영리법인·종교시설·가족 또는 종중이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제로 완화함(안 제29조).

불법분묘 정비제도의 개선

- 과거 관습적인 분묘기지권의 주장으로 불법 분묘의 정비가 어려웠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강제하는 법규정상의 근거 조항 명시가 필요함.
- 개정안:
 -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의 명시적 삽입(안 제26조)
 - 공익 목적상의 개장명령 불이행의 경우 행정대집행의 근거 마련(안 제 29조)

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묘지를 의무화하고 사설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를 신고제로 개정한다.

법의 실효성 확보

- 현행 묘지관련 법규의 실효성이 미약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규상에 시정 및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개정안:
 - 묘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 마련(안 제27조)
 - 장묘시설의 사용금지, 폐쇄 또는 허가 취소 근거 마련(안 제28조)
 -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근거 마련(안 제31조)
 -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(안 제37조, 38조).
 -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: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시, 장묘시설을 허가없이 변경 혹은 폐쇄시, 불법분묘의 정리명령에 위반한 불법분묘의 매장자
 - ②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: 묘지가 아닌 구역을 묘지로 제공, 알선, 방조자/ 매장, 화장, 개장의 신고 불이행
 -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: 사망 후 24시간 이내 매화장/ 집단묘지의 사용기간 과다연장

.....

주요 정책토론(1) : 장묘제도 개선방안

묘지관련 법규의
실효성을
확보하기 위하여
위반사항에 대한
과징금
처분근거를
마련하였다.

행정규제의 완화

-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고제로 완화함(안 제19조).
- 법규상의 중복허가 조항을 단일화함.
 - 묘지설치허가시 산림형질 변경 허가의 의제처리(안 제20조)
 - 시체운반업 허가제를 폐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특수여객자동차운수 사업면허로 일원화

기타 사항

- 개정안에서도 분묘기지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.
 - 이 법 시행 당시 불법묘지 중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불법묘지에 대한 규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(부칙 4조).
 - 불법 분묘의 개장 명령에 불복할 경우 매장자는 처벌대상이 되나 연고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됨(제37조 2항).
- 법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, 사용금지, 폐쇄, 허가취소,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는 대부분 별도의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음.